## 가 정 통 신



## (개정)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안내-가해자와 피해학생 즉시분리 제도

2021학년도 웃터골<제 126호>

**№** 114191213 경기도 시흥시 은행고길 18 ☎(교무실)070-7096-7707 (담당자)070-7096-7741

존경하는 웃터골초등학교 학부모님께 드립니다.

늘 본교 교육에 협조하여 주시고, 응원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항이 2021.6.23.(수)부터 시행 관련 사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해드립니다.

- 1. 학교폭력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내용
  - 가. 가해자와 피해학생 즉시분리 제도 도입 :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거나 신고 접수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한다.
  - 나. 가해학생 즉시분리의 예외사유(시행령 제17조의2)
    - ① 피해학생이 분리 조치에 반대의사를 표명
    - ② 학교가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
    - ③ 가해학생 선도조치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
    - ※ 쌍방이 서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, 관련학생 모두 즉시 분리가 원칙
- 2. 제도 도입취지 : <u>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및 2차 피해를 방지</u>, 고조된 학교 폭력 갈등 상황 완화를 위해 동일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발생 초기에 학교장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일시분리
- 3. 운영 절차 흐름
  - 가. 학교폭력 사안 인지 또는 신고 접수 시 <u>반드시 피해학생과 학부모(유선)에게 내용 전달 및 분리의사 확인(가해자에 대한 즉시분리 의사 확인서 <서식> 필수)과</u>함께 지도의 취지, 기간, 출결, 이후 사<u>안처리 절차안내</u>
  - 나. 기간 : '즉시분리'는 최대 3일 범위 내 (당일을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 포함)
  - 다. 별도 공간 마련(교무실, 상담실, 도서실, 연구실 등), 별도 공간 마련이 어렵거나 관리 인원이 없을 경우 가정 또는 기타 학교 외의 장소(wee 센터 등)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음.
  - 라. 가해학생 학습권 : 교과서, 학습지와 필요에 따라 원격 및 온라인 학습 제공
- \* 학부모 Q&A와 가해자에 대한 즉시분리 의사 확인서 <서식> 뒷면 참조

2021. 9. 16.

웃 터 골 초 등 학 교 장

## 학부모 질문 Q&A

# Q 1.학교폭력으로 사안 접수가 되면 모든 사안에 대해 즉시분리 조치가 적용이되나요?

A. 네, 접수된 사안은 현행법에 의거해 반드시 적용을 합니다.(학교폭력 예방 및 그 대책에 관한법률 제 16조1항, 시행령 제 17조의 2) 최대 3일 이내에서 즉시 분리 조치가 시행되며, 사안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부터 적용합니다. 가해추정 학생에게는 학교 내 별도의 공간에서 학습자료가 제공되어(관리 교사) 학습권은 보장이 되며 원할 시 가정 분리도 가능합니다. 가정분리를원해서 학교를 오지 않더라도 학교생활기록관리 및 작성 지침에 따라 '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'로 처리합니다. (최대 3일이내의 기간은 최대분리기간을 의미하며 모든 사안을 72시간 분리하지는 않습니다.)

#### Q 2.. 우리 아이는 가해를 할만한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분리를 해야 하나요?

A.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분리를 해야 합니다. 통상적으로 사안조사 초기단계에서는 피·가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관련 학생으로 통칭합니다. 하지만 경기도교육지원청 지침에 따르면 사안 접 수가 되자마자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가해추정 학생을 위 법률에 의거해 반드시 즉시분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.

#### Q 3. 학생의 학급이 다르더라도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나요?

A. 학급이 다르다고 해서 분리가 되어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. 해당 학생의 교내 동선 및 검토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분리 조치가 시행됩니다.

#### Q 4. 즉시 분리에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?

A. 사안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로 이어질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가증될 수 있으며, 피·가해가 명확할 경우 학교장 긴급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. 학교는 그리고 불응 사항을 반드시 사안조사 보고서에 명시해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하게 됩니다.

## Q 5. 즉시분리 조치가 끝난 후에도 학생이 등교하기를 무서워 합니다.

A.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 (피해학생 보호조치 관련)과 관련해 학교의 장은 긴급하다고 인정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 제 1호,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 각 호에 따른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.

1호: 피해학생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(Wee센터, 정신건강복지센터 등)

2호: 피해학생 일시보호(보호시설, 집 또는 상담실)

6호: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

### 가해자에 대한 즉시분리 의사 확인서(피해학생용)

#### ■ 사안번호:

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제16조제1항에 따른 가해자에 대한 즉시분리를 (희망, 반대)합니다.

20 년 월 일

피해학생: (서명 또는 인)

웃터골초등학교장 귀중